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Inside this Issue

최근 소식..... 2

- 중국, 생물학 무기 관련 통제목록 업데이트

불법 밀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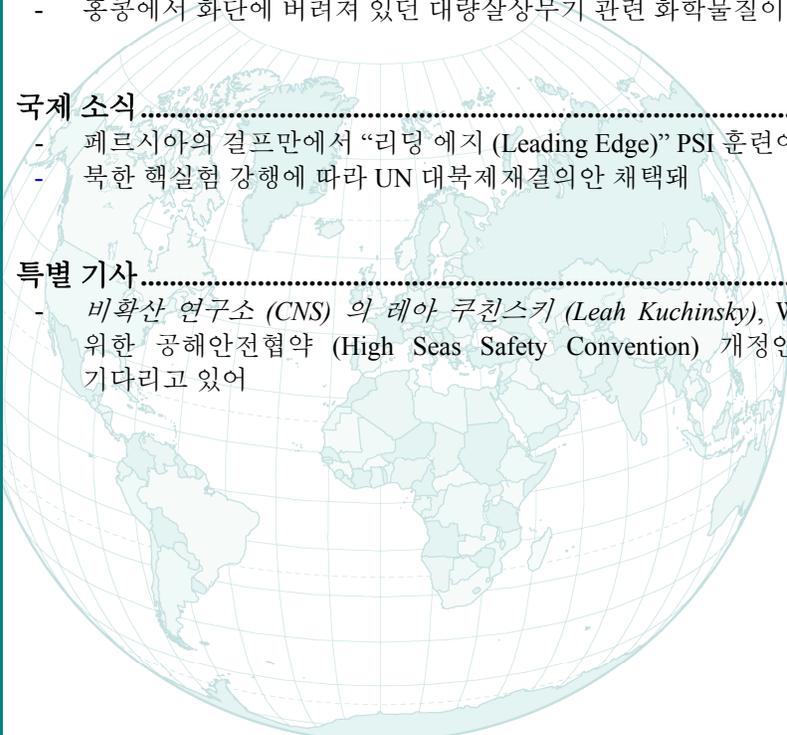
- 미스토요 (Mitutoyo) 직원, 이란으로 핵 장비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 한국 정부, 불법 수출 금지-그러나 수출통제이행 상황은 여전히 엄격하지 못 해
- 시리아로 향하던 수상한 북한 화물이 사이프러스에서 적발돼
- 홍콩에서 화단에 버려져 있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학물질이 발견돼

국제 소식..... 7

- 페르시아의 걸프만에서 “리딩 에지 (Leading Edge)” PSI 훈련이 실시돼
-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라 UN 대북제재결의안 채택돼

특별 기사..... 11

- 비확산 연구소 (CNS) 의 레아 쿠친스키 (Leah Kuchinsky), WMD 선적을 금지하기 위한 공해안전협약 (High Seas Safety Convention) 개정안이 1년 넘게 비준을 기다리고 있어



## 최근 소식

### 중국, 생물학무기 관련 통제목록 업데이트

2006년 7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생물학무기 (Biological Weapons [BW]) 관련 이중용도 물자의 통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 목록은 2002년 10월에 공표된 이중용도 생물학 병원체와 관련 장비 및 기술의 수출통제 관한 규정 (Regulations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Biological Agent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에 첨부되었던 통제 목록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2002년에 발표되었던 통제 목록에는 각종 바이러스, 박테리아, 생물학 무기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 등 총 22가지 통제 품목을 규정하였으며, 당시의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통제 목록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었다. [편집자 주: 2002년에 발표된 통제 목록은 <<http://www.cns.miis.edu/research/china/chixp/bioctrl.htm>>에서 볼 수 있다.]

2006년 7월에 발표된 개정 목록은 2002년에 처음으로 생물학 무기 관련 통제 목록이 발표된 이후 최초의 포괄적 업데이트판이다. 여기에는 2002년 목록에서는 제외되었던 독극물뿐만 아니라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호주그룹(AG) 통제 목록에 추가된 품목도 포함되었다.

편집자 주: 중국은 호주그룹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당 그룹과 공조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그룹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으며, 호주그룹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1,2,3]

중국 당국이 발표한 개정 목록에는 9종의 바이러스, 2종의 독극물, 2종의 박테리아, 한 가지 장비류 등 총 14가지 신규 통제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2002년 목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박테리아 11종에 관한 통제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추가된 9종의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다:

1. 헨드라 바이러스 (Hendra Virus)
2. 남아메리카 출혈열바이러스 (South American Hemorrhagic Fever Virus)
3. 폐 및 신장부 출혈열바이러스 (Pulmonary and Renal Hemorrhagic Fever Virus)
4.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5. 럼피스킨병 바이러스 (Lumpy Skin Disease Virus)
6. 아프리카 마역 바이러스 (African Horse Sickness Virus)
7. Potato Andean Latent Virus
8. Potato Spindle Tuber Viroid Virus [PSTVd]
9.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SARS coronavirus)

1번~6번까지의 품목은 2003년 6월에 호주그룹 공통 통제목록에 추가되었으며, 7번과 8번 품목은 2004년 6월부로 추가되었다. 사스는 호주그룹의 통제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특수상황”의 결과로 중국의 통제 목록에는 추가되었다. 중국에서는 2003년에 사스가 발발했으며, 중국 본토에서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 - 8,096명 중 5,325명 - 이 사스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했다. 2003년 최초의 사스 발발 상황이 진정되기까지, 싱가포르 과학자와 대만 과학자 등 적어도 두 명의 과학자가 사스 치료법 및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던 중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 사건은 중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원인 바이러스 (causative virus)의 통제 및 관리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4,5,6,7]

중국 통제 목록에 추가된 2종의 박테리아는 2004년 호주그룹 목록에 추가된 바 있는 *Clavibacter michiganensis*, *Burkholderia pseudomallei* 등이다. 또한 라신 (ricin), 색시톡신 (saxitoxin) 등 2가지 독극물도 목록에 추가되었는데, 이들 독극물이 AG 공통통제목록에 “생물학 병원균”으로 등록되어있는 것과 별개로,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의 제1종 화학물질 (Schedule 1 chemicals) 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중국은 화학무기협약 (CWC)에 등재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1998년 통과된 각종 법규 및 통제목록에 의거하여 이들 독극물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화가 해당 물질의 통제에 있어 현저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이로써 중국의 생물학 병원균 통제 목록은 AG 목록과 일치하게 되었다.

2005년 AG 통제 목록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국 역시 “스프레이 또는 스프레이 분사 발전시스템 및 장치 (spray aerosol generator systems and components)를 통제 목록에 추가하였다.

중국 통제 목록에 포함된 품목 중 통제 수위가 강화된 11종의 박테리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키야사나 삼림병 바이러스 (Kyasanur Forrest Virus)
2. 도약병 바이러스 (Louping-ill Virus)
3. 머레이 벨리 인세팔리티스 바이러스 (Murray Valley Encephalitis Virus)
4. 옴스크 출혈열바이러스 (Omsk Hemorrhagic Fever Virus)
5. 오로푸스 바이러스 (Oropouche Virus)
6. 포와센 바이러스 (Powassan Virus)
7. 로시오 바이러스 (Rocio Virus)
8. 세인트루이스 인세팔리티스 바이러스 (St. Louis Encephalitis Virus)
9. 잔토모나스 균 (Xanthomonas oryzae)
10.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Clostridium perfringens)

## 11.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 coli]

위의 품목들은 중국의 2002년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호주그룹(AG)의 당시 “워닝리스트”에도 등재되어 있었다. 이들 품목은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AG 공통통제목록에 추가되었다. [편집자 주: 호주그룹의 “워닝리스트 (Warning List)”은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워닝리스트에 등재된 품목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지속적인 모니터를 받게 되지만, 공통통제목록 (Common Control List) 에 등재된 품목들처럼 엄격한 통제를 가할 필요는 없다. “워닝리스트”에 포함된 품목 중 회원국들이 더욱 엄격한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품목에 한해 통제목록으로 옮겨지게 된다.] 위의 11종 품목은 현재 중국통제 목록의 제1파트에서 제2파트로 옮겨졌으며,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사스 코로나바이러스 (SARS coronavirus) 역시 자동적으로 통제목록 제2파트에 추가되었다.

새로 개정된 이번 목록에는 동결건조 (freeze-drying) 및 교차흐름 여과 관련 장비 (cross-flow filtration-related equipment) 의 통제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24시간 안에 10킬로그램 이상 1,000킬로그램 이하의 얼음을 응축할 수 있는 동결건조 장비의 일부에 한해서만 통제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후 24시간 안에 10킬로그램 이상 1,000킬로그램 이하의 얼음을 응축할 수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한 통제가 확실히 명기되었다. 교차흐름 여과 장비 관련 조항에서는 총 여과범위가 1평방미터가 되는 장비는 통제 대상이 된다고 명기되었다. 이전에는 여과범위가 5평방미터 이상인 장비에 대해서만 통제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결건조 장비는 배양균의 생존을 연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장비이며, 교차흐름 여과 장비는 생물학 병원균을 오염, 분리,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동결건조 장비와 교차흐름 여과 장비 모두 호주그룹의 공통통제목록에 등재되어 있다.[7,8,9]

Sources: [1] “Foreign Ministry Spokesman Liu Jianchao’s Remarks on China’s Renewed Control List of Regulations on Control of Dual-Use Biological Agent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ugust 1, 2006, <www.fmprc.gov.cn/eng/xwfw/s2510/2535/t265668.htm>. [2] “Regul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Biological Agent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Sweden, October 14, 2002, <http://www.chinaembassy.se/eng/xwfd/t101538.htm>. [3] “China to Further Control of Biological Exports, FM Spokesman,” Xinhua Economic Newswire, July 2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www.lexis-nexis.com>. [4] “Summary of Probable SARS Cases with Onset of Illness from 1 November 2002 to 31 July 2003,” World Health Organization, December 2003, <http://www.who.int/csr/sars/country/table2004\_04\_21/en/index.html>. [5] “Singapore Man Has SARS,” BBC News, September 9, 2003,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3092220.stm>. [6] “Taiwan Announces New SARS Case,” BBC News, December 17, 2003,

<http://news.bbc.co.uk/1/hi/world/asia-pacific/3326377.stm>. [7] China’s Ministry of Commerce “Chanye si fuzeren jie du xiuding hou de ‘Shengwu liang yong pin ji xiangguan shebei he jishu chukou guanzhi qingdan’ [Interpreting the revisions to the ‘Dual-Use Biological Agents and Rel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Export Control List’],” August 10, 2006, Ministry of Commerce website, <http://exportcontrol.mofcom.gov.cn/aarticle/ar/200607/20060702758613.html>. [8] “MOC Issues Revised List of Export Control of Dual-Use Biological Products and Affiliat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Xinhua Economic News Service, August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www.lexis-nexis.com>. [9] “The Military Critical Technologies List Part I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chnologies,” U.S. Department of Defense, II-3-15, <http://www.fas.org/irp/threat/mct198-2/p2sec03.pdf>.

## 불법 밀매

### 미스토요 (Mitutoyo) 직원, 이란으로 핵장비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9월 14일, 도쿄 지방검찰청은 3차원 정밀측정기 (3-dimensional precision measuring devices) 를 말레이시아로 불법 수출하여 일본 수출통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일본 미스토요 사의 전(前)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이들 4명은 각각 미스토요의 전(前) 사장이었던 테즈카 카즈사쿠 (Kazusaku Tezuka), 타카즈지 노리오 (Norio Takatsuji) 전(前) 부사장, 치쿠고 히데오 (Hideyo Chikugo) 전(前) 상무이사, 키무라 테즈오 (Tetsuo Kimura) 전(前) 임원 등이다. [1] 만약 혐의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이들 4명은 각각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게 된다.[2]

편집자 주: 3차원 정밀측정기는 우라늄 농축용 가스 원심분리기를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장비이다.[3] 미스토요 사는 초정밀 측정장비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4]

Observer지가 앞서 보도했듯이, 미스토요 사의 불법행위 혐의는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사이에 리비아를 방문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미스토요 사의 3차원 정밀측정기를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리비아에서 발견된 장비는 싱가포르에 있는 미스토요 지사로 수출된 후 말레이시아의 스코미 정밀엔지니어링 (Scomi Precision Engineering [SCOPE]) – 칸 (A.Q. Khan) 의 밀매망에 속해 있는 – 으로 이전되었으며, 칸의 행동조직에 의해 2001년 12월과 2002년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두바이를 거쳐 리비아로 재이전되었다.[3,5]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었으며, 2006년 2월에는 몇 차례에 걸쳐 미스토요 사에 대한 급습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편집자 주: 미스토요 사의 전 간부들에 대한 최근의 기소 조치의 배경이 된, 리비아에서 발견된 미스토요 사의 장비와 이후 수사에 관한 Observer지의 이전 기사 내용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년 11월/12월호, 8-9 페이지의 “리비아 핵 시설에서 일본산 장비가 발견돼” 기사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3월호, 9-10 페이지의 “밀매 적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철저한 감시 하에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스코피 정밀엔지니어링 (SCOPE) 및 SCOPE의 칸 (Khan) 밀매망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4년 4월호, 9-10 페이지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핵 밀매망에 연루돼”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들이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스토요 사의 간부들은 일본 국내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회사의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수출통제규정의 통제망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3] 당시 미스토요 사의 해외영업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던 타카즈지 노리오와 치쿠고 히데오는 수출통제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세관 신고서 및 허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장비의 실제 측정 정밀도를 위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휘했다. [편집자 주: 이 때 개발된 프로그램에는 ‘COCOM’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는 과거 만들어졌던 국제 공급국체제의 명칭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회사 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략 10,000대의 장비가 적절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었다. [3,6,7]

일본 수사당국은 미스토요 사가 1984년에서 2002년 사이에 적어도 9대의 정밀측정장치를 이란으로 수출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8] 이란으로 수출된 장비는 최근 일본 당국의 급습 수사를 받은 도쿄의 한 무역회사인 세이안 사 (Seian) 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세이안 사는 일본의 “요주기업 목록 (entities list)”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등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3] 그러나 이란 당국은 이러한 거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하미드 레자 아세피 (Hamid Reza Assefi)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핵 개발과 관련하여 이란과 일본 기업 사이에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고 단언하였다.[9]

일본 당국은 미스토요 사가 북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6년 9월 5일, 일본 후지 TV는 북한 뉴스 보도 중에서 미스토요 로고가 붙은 장비가 비춰지는 장면을 포착하여 보여주었다. 화면에서 포착된 장비는 고강도 스틸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열중량 기기 (thermogravimetry apparatus)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본에서 수출되기 위해서는 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당 장비가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미스토요 사의 간부들이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경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10]

최근 미스토요 사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기업들의 수출통제 위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출통제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행 일본 수출통제 규정에 따르면, 일본 국내 기업이 북한이나 이란 등 확산 우려가 있는 국가로 50,000엔 (약 420달러) 이상 규모의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이들 요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모든 통제물자에 대해 금액에 관계 없이 허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편집자 주: 2003년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일본 당국은 리비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확산국가 목록에서 곧 리비아를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6]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몇 개월 간 북한으로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서서히 강화해왔다. 첫 번째 제재강화 조치는 2006년 9월에 발표되었는데, 이는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제한 조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의심되는 16개 북한 기업 (15개의 기업 및 1명의 개인) 에 대한 자금 송금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 북한산 물품 및 북한인, 북한 선적 등이 일본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11,12,13]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2006년 10월에 통과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동차나 주류, 담배 등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추가적으로 금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14]

Sources: [1] “4 Ex-Mitutoyo Executives Indicted for Illegal Nuke-Linked Exports,” Jiji Press, September 14,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Kabushiki Gaiisha Mitutoyo no Gaitame Ho Ihan ni Kakawaru Kokuhatsu ni suite [Indictment of Mitutoyo Co. Violating the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Press Release,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website, September 8, 2006, <<http://www.meti.go.jp/>>. [3] Peter Crail, “Evading Export Controls: Mitutoyo Corporation as a Case Study in Determined Proliferation,” WMD Insights online edition, October 2006, <[http://www.wmdinsights.com/19/19\\_EA1\\_EvadingExport.htm](http://www.wmdinsights.com/19/19_EA1_EvadingExport.htm)>. [4] “Editorial: Illegal High-Tech Exports Threaten Global Security,” Yomiuri Shimbun, August 2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Japanese Export Controls under Scrutiny as Revelations of Illicit Transfers Continu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6, pp. 9-10,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6] Associated Press, “Japan Mulling Overhaul of Export Control Laws to Curb Weapons-Related Trad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nline edition, September 13, 2006, <<http://www.iht.com/>>. [7] “Mitutoyo Schemes Systematic, Executives Aware of Illegality of Exporting Sensitive Devices,” Yomiuri Shimbun online edition, August 28, 2006, <<http://www.yomiuri.co.jp/dy/>>. [8] “84 Nen, Iraku tono Sensochu Iran ni Sokuteiki Yushutsu Mitutoyo, Gokei de 9 Dai [In 1984, While Iran-Iraq War, Mitutoyo Exported Total 9 Measuring Devices],” Sankei Shimbun, via Goo News, September 29, 2006, <<http://news.goo.ne.jp/>>. [9] “Husei Yushutsu, Iran Seifu ha Torihiki Hitei [Illicit Exports, Iranian Government Denied the

Transactions],” Tokyo Broadcasting System, August 28, 2006, <<http://news.tbs.co.jp/index-j.htm>>. [10] “Japan: DPRK Film Shows Steel Mill Using Mitutoyo’s Illegally-Exported Device,” Tokyo Fuji Television, September 5, 2006; in OSC Document JPP20060907004001. [11] “Japan to Tighten Export Controls, Raise Awareness of Export Controls among Japanese High-Tech Exporter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6, pp. 4-5,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12] “Gaikoku Kawase oyobi Gaikoku Boeki Ho ni motodoku Kita Chosen kara no Yunyu Kinshi Sochi To ni tsuite [Bans of Imports from North Korea Based on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Press Release, METI website, October 13, 2006, <<http://www.meti.go.jp/>>; “Gaikoku Kawase oyobi Gaikoku Boeki Ho ni motodoku Kita Chosen no Misairu mataha Tairyō Hakai Heiki Keikaku ni Kanren suru Shikin no Iten wo Boshi suru Sochi ni tsuite [Bans of Money Transfers over North Korean Missile and WMD Developments Based on Foreign Exchange and Foreign Trade Control Law],” Press Release, METI website, September 19, 2006, <<http://www.meti.go.jp/>>. [13] “Kita Chosen Heno Fusei Yushutsu Tekihatsu Kyōka [Efforts to Uncover Illicit Exports to North Korea],” NHK, October 12, 2006, <<http://www3.nhk.or.jp/>>. [14] “Sanctions to Include Luxury Items,” Yomiuri Shimbun online edition, October 18, 2006, <<http://www.yomiuri.co.jp/dy/>>.

## 한국 정부, 불법 수출을 금지해—그러나 수출통제 이행 상황은 여전히 엄격하지 못 해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규정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제 물자의 불법 수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한국 수출통제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국제적 요청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불법 수출을 자행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느슨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해당 위반 업체들에게 제재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편집자 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11월호, 18-19 페이지의 “특별기사: 한국 내 수출통제 인식은 높아졌으나 이행 역량은 아직 부족해”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그러나 아래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는 수출통제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 (MOCIE) 가 마련한 엄격한 통제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거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2006년 10월 1일, 한국 한나라당 소속의 김기현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군 물자를 수출하려던 두 한국 기업의 수출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소속의 김 의원은 산업자원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H업체” 라고만 언급된 한 한국기업이 2005년 8월, 미사일 탄두를 자르거나 가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인 에어컴프레서 기기 (air compressor machines) 4대를 북한 기업에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2006년 9월 15일, 이 업체의 수출을 저지했다.[1,3]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불법 수출을 감행하려던 한국 “K업체”의 수출도 사전에 저지한 바

있다. K업체가 수출하려던 물자는 우라늄 농축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 관련 장비였다.[1,2,3]

두 사례 모두에서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해당 기업들에게서 향후 수출통제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법적 처벌은 가하지 않았다.[1,3] 한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들 기업이 전략 물자의 수출 행위를 고의로 은폐했는지, 아니면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지 않은 것은, 모든 위법행위의 책임을 기업에게 지우고 이 같은 “경솔한” 위반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취지로 2005년 8월, 산업자원부가 기안한 새로운 규제 방안과 상호 모순되는 조치이다.[5,6]

한국 정부의 수출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더 있다. 2005년 12월, “45세의 이모씨”로만 알려진 한 한국 수출업자가 중동의 모 국가로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 (potassium bifluoride) 25톤을 수출하려다 실패했다. 이모씨는 해당 물질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2006년 5월, 동일한 수입자에게 또 다른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 15톤을 불법 수출하려다 적발되어 2006년 10월 12일, 결국 체포되었다. [편집자 주: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이유를 들어 수령 국가가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중동에 위치한 국가라고만 밝혔다.][7,8,9,10]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는 호주그룹 (AG) 의 통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이중용도 화학물질로써, 화학무기의 전조물질이나,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핵분열성 물질을 추출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한국은 호주그룹의 회원국으로써 해당 물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모씨는 2006년 5월 수출서류 상에 내용물이 목재 방부제라고 허위 기재하였으나, 선적되는 물품의 실제 화학적 특질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했다.[11] 수출대금으로 27,500달러를 받은 이모씨는 징역 5년 형과 함께, 2006년 5월에 선적하려 한 물품 대금이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7,8]

Sources: [1] Ch’oe Mun-sŏn, “Haengmujang’e chŏnyong kanūnghan changbi kungnaegiŏp’i pukhan’e such’ulhal bbŏn [Domestic Firm Almost Exported Equipment for Use in Nuclear Weapons to NK],” *Hankook Ilbo*, October 1, 2006; in KINDS, <<http://www.kinds.or.kr/>>. [2] “Two S. Korean Firms Tried to Export Military Material According to N. Korean Lawmaker,” *Yonhap News Agency*, October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3] Kim Chae-jung, “Kungnaeŏpch’e 2kot, pukhan’e misail, uranyum kwallyŏn chep’um suchulharyŏda chŏkpal [Two Domestic Companies Exposed in Attempt to Export Missile, Uranium Related Goods to NK],” *Kukmin Ilbo*, October 1, 2006; in KINDS, <<http://www.kinds.or.kr/>>. [4] “Ch’ŏlyakmulcha wibŏp such’ulhaedo pyŏltarūn ch’ŏbŏlŏpsŏ sashilsang myŏnjoebu puyŏ [No Particular Punishment for Illegal Export of Strategic

Goods; Pardon Granted],” *Podojaryo*, October 2, 2006, Assemblyman Kim Ki-hyön website, <<http://www.eut.co.kr/>>. [5] Yonhap News Agency, “S. Korea to Tighten Grip on Strategic Exports,” August 16, 2005; in OSC Document KPP20050816000033. [6] Choe Chông-uk, “Chôllyakmulcha Kwalli Kanghwa Wihae Taewoemuyôkpôp Kaechông Ch’ujin [Foreign Trade Reforms Submitted for Strategic Goods Administration],” *Kukmin Ilbo*, August 16,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7] “Korean Held for Export of Strategic Nuclear Goods,” *Chosun Ilbo* online edition, October 13, 2006, <<http://english.chosun.com/w21data/html/news/200610/200610130011.html>>. [8] Annie I. Bang, “Trader Nabbed for Smuggling Nuke Material,” *Korea Herald*, October 13,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9] Yi Pyông-kwan, “Haengmulchil 15t’on chungdong milbanch’ul [15 Tons of Nuclear Material Smuggled Out to Middle East],” *Sôul Kyôngje Sinmun*, October 12, 2006; in KINDS, <<http://www.kinds.or.kr/>>. [10] Kang Kye-man, “Haekchôllyangmulcha chungdong’e milbanch’ul [Nuclear Strategic Goods Smuggled Out to Middle East],” *Maeil Kyôngje Sinmun*, October 13, 2006; in KINDS, <<http://www.kinds.or.kr/>>. [11] *Chemical Weapons: What’s What*, United Nations Office of Drugs and Crime (UNODC) website, <[http://www.unodc.org/unodc/terrorism\\_weapons\\_mass\\_destruction\\_page004.html](http://www.unodc.org/unodc/terrorism_weapons_mass_destruction_page004.html)>.

### 시리아로 향하던 수상한 북한 화물이 사이프러스에서 적발돼

2006년 9월 5일, 북한을 출발해 시리아로 향하던 파나마 국적 선박 그레고리오 호 (Gregorio-I) 는 무기 밀매혐의로 리마술의 사이프러스 항에서 붙잡혔다. 이번 사이프러스 사건은 해당 선박이 북한 무기시스템을 운반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미국 당국 및 인터폴의 비밀 정보에 의한 것이다. 미국 정보기관과 인터폴은 몇 개월 전, 그레고리오 호가 북한을 출발하기 이전부터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1,2,3,4]

그레고리오 호는 지난 5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선박명파국적을 바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3] 해당 선박은 현재 그리스 소재의 트랜스아틀란틱 마린타임 (Transatlantic Maritime) 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양운수 그룹 (COSCO) 이 이 선박을 트랜스아틀란틱 사로부터 임대했다.[5] 그레고리오 호는 북한을 출발한 후 먼저 중국에 정박했다가 이집트의 사이드 항에 정박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시리아의 라타키아였다. 시리아로 가기 전, 연료 공급을 위해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사이프러스 항이었으며, 이 곳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힌 것이다. 경찰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국적의 승무원 15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2,3]

2006년 7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 Security Council) 가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미사일 관련 물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결의안 1695호가 채택된 후, 그레고리오 호의 화물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 해당 선박의 적하 목록에는 화물의 내용물이 기상관측

장비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국은 그레고리오 호가 실은 화물이 북한산 미사일 관련 물자일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두었다. 선박을 수색한 사이프러스 세관 당국자들은 18대의 트럭 탑재 이동식 레이더시스템 (truck-mounted mobile radar systems) – 이후 대공방어 시스템으로 밝혀짐 – 및 3대의 지휘차량 (command vehicles) 을 발견했다. 수색 과정에서 금속 파이프도 발견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미사일 발사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으나, 이후 관개용 파이프 (irrigation pipes) 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선박의 관리인은 해당 금속파이프는 중국에서 선적되었다고 밝혔으며, 사이프러스 당국의 조사 결과 트럭 탑재 레이더시스템은 북한에서 선적된 것으로 드러났다.[5] [편집자 주: 북한과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결의안 1695호가 채택되기 전에는, 대공방어미사일 등 군 관련 물자를 시리아로 운송하는 것이 국제적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과 시리아는 해당 화물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이 사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기사 중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라 UN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돼” 기사를 참조하시오.]

그레고리오 호가 운반하던 화물이 미사일 관련 물자가 아니라고 판명되자, 시리아 정부는 사이프러스 세관에 해당 선박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이프러스 정부는 화물의 적하 목록이 허위 기재된 사실을 빌미로 삼아 해당 선박을 계속 붙잡아두기로 했으며, 화물 운송업자 혹은 수출자에게 사이프러스로 운반된 군사물자에 관한 사실정보를 사이프러스 당국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1,5] 시리아 정부는 그레고리오 호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이프러스 당국에 환적 허가서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제출했다. 사이프러스 검찰청 및 외무부, 국방부, 사법기관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허가서 발급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사이프러스 세관이 허가를 발급하였다. 해당 화물의 압류가 해제된 것은 2006년 9월 27일이다.[1]

Sources: [1] “Cyprus Releases Syria-bound Weapons Ship,” Associated Press, September 27, 2006, <<http://www.ynetnews.com/articles/0,7340,L-3308901,00.html>>. [2] “Cypriot Authorities Impound Greek-Owned Ship Sailing from North Korea to Syria,” *Elevtherotipia* (Athens), September 7, 2006; in FBIS Document EUP20060912143003. [3] “Cyprus Finds Air Defense Systems on Syria-Bound Ship,” Reuters, September 11, 2006, <<http://www.haaretz.com/hasen/spages/761360.html>>. [4] “Cyprus Seizes N. Korean System for Syria,” *Middle East Newline* (MENL), September 12, 2006. [5] “Syria-bound Ship Free to Go But Not Defence Cargo,” Reuters, September 21, 2006, <<http://www.khaleejtimes.com>>. [6] “Cypriot Police Quiz ‘Syria Arms’ Ship,” *Financial Times*, September 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7] “Ship’s Cargo Reportedly is Air Defense System,” *Los Angeles Times*, September 12,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 홍콩에서 화단에 버려져 있던 대량살상무기 관련 화학물질이 발견돼

2006년 8월 18일, 홍콩일간지 MingPao 지는 홍콩 주룽 만(Kowloon Bay) 지역 내 Kai Yip 아파트 주차장에서 매우 민감한 통제 물질이 포함된 꾸러미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봉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꾸러미를 발견한 청소부가 이를 아파트 보안요원에게 건네주었고, 보안요원은 꾸러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홍콩 경찰은 꾸러미 속에서 백색 가루 두 봉지 및 액체가 든 유리병 두 개를 발견했다. 백색 가루가 든 봉투의 겉면에는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potassium bifluoride)를 뜻하는 화학기호 “KHF2”가 써어있었으며, 액체가 든 유리병에는 라벨이 붙어있지 않았다. 함께 들어있던 선적 인보이스에는 이 물질이 중국 선전(Shenzhen) 지역에서 온 것으로, 2005년 12월에 이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적혀있었다. 해당 물질이 왜 홍콩의 아파트 건물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1,2] 그러나, 홍콩의 수출통제 시스템에 정통한 한 분석가는 해당 물질을 이란으로 운송하기 위해 홍콩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안 중개상이 이를 화단에 내다버린 것으로 추정했다.[2]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매우 위험한 부식성 유독 물질이다. 이 물질은 신경성 병원체 사린(sarin) 등 다양한 화학무기 병원체의 전조물질로 사용되며,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 시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때도 사용된다.[2] 또한, 특수광학유리를 에칭(etching)하거나 목재 방부제를 제조하는 등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된다.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이중용도 물질이기 때문에 홍콩의 전조 화학병원체 규정(Precursor Chemicals of Toxic Chemical Agents Regulations)에 의거해 수출 및 환적이 통제된다. [편집자 주: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는 호주그룹의 통제 목록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화학무기협약(CWC)의 통제화학물질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06년 10월 12일, 한 한국인이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 몇 톤을 한국에서 어떤 중동 국가로 수출하려다가 체포 및 기소된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기사 중 “한국 정부, 불법 수출을 금지해-그러나 수출통제 이행 상황은 여전히 엄격하지 못 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번 홍콩사건은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다 가중시켰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WMD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 대규모의 제재조치를 부과한바 있다. 2002년 이후, 중국 정부는 WMD 관련 물자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02년 10월, 포타슘

바이플로라이드와 같은 AG 통제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무기 관련 통제목록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화학산업은 현재 성장세에 있으며 집계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기업들도 많이 있다. 중국의 수출통제 당국과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들 소규모 기업들이야말로 중국 수출통제 시스템의 기반과 역량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3]

Sources: [1] “WMD Material Found in Hong Kong Flower Container,” Global Security Newswire, August 21, 2006,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website, <[http://www.nti.org/d\\_newswire/issues/2006\\_8\\_21.html#638A6852](http://www.nti.org/d_newswire/issues/2006_8_21.html#638A6852)>.

[2] “HK Finds Iran-Bound Substance for Making Chemical Weapons, Extracting Plutonium,”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 August 1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China and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CBW) Nonproliferation,” NTI website, <<http://www.nti.org/db/China/cbwpos.htm>>.

## 국제 소식

### 페르시아의 걸프 만에서 “리딩 에지 (Leading Edge)” PSI 훈련이 실시돼

2006년 10월 말, 바레인에서 아랍리프 국가로는 최초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훈련이 개최되었다. “리딩 에지 (Leading Edge)” 라는 이름의 이번 훈련은 페르시아 걸프 만에서 실시되었으며, 훈련의 주된 부분은 PSI 활동의 주요 타겟인 이란 영해에서 20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서 실시되었다. 주최국인 바레인과는 별개로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의 군인들이 참여한 2단계 훈련이 실시되었다.[1]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아랍 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의 4개 국가가 참관국으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덴마크, 독일,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한국 등 14개국도 가상 해상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군관계자 및 사법당국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1,2,3,4,5,6]

주요 해군 훈련은 2006년 10월 30일에 실시되었으나, “리딩 에지” 훈련의 제1단계는 10월 23일, 훈련에 참여한 6개국 간의 정보 협력, 명령 및 통제체제 운영 훈련으로 시작되었다.[1,7] 해군 훈련에서는 참가국의 훈련팀들이 승선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가상 승선 훈련이 포함되었다.[7] 우선 이탈리아와 바레인의 해군 병력이 페르시아 걸프 해에 위치한 영국 유조선에 승선하고, 핵폭탄을 찾기 위해 2시간 가량 선박을 수색하는 훈련을 했다.[1] 상업선박 (commercial vessel) 의 역할을 한 영국 해군선박과 별개로, 3척의 바레인 선박 및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각 1대씩의 선박이 훈련에 투입되었다.[7]

“리딩 에지” 훈련 개최에 대한 논의는 2006년 1월부터 있었으나, 실제로 훈련 개최가 합의된 것은 이란이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핵 프로그램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원심분리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이다.[1,8] 이란은 PSI 훈련이 걸프 만, 특히 이란 영해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에서 실시되는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 훈련은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의 “모험주의 (adventurism)” 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1,2] 다자간 PSI 훈련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는 2006년 11월 2일, 일련의 모의 전투를 실시했다. 이번 군사작전에서는 이란 사하브 탄도미사일 (Shahab ballistic missile) 실험도 포함되었다.[9]

“리딩 에지” 훈련은 북한 핵실험 및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 실시된 PSI 훈련이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PSI의 타겟 중 하나이며, 10월에 실시된 훈련 내용 중에는 북한에 대한 UN 제재결의안의 이행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훈련도 포함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리딩 에지” 훈련에 해안경비 당국자를 포함한 3명의 참관인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외교통상부장은 2006년 10월 27일의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은 PSI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내에서 PSI 조치들이 시행되는데 대해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송민순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동일한 국회 회의 석상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해상 봉쇄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10]

편집자 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혹은 미사일 관련 장비 및 기술이 항공, 해상, 육상 경로를 통해 불법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5월,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다자간 공동구상이다. 미국 정부 평가자료에 따르면, 70여 개국이 PSI 및 PSI 의 차단원칙 (Interdiction Principles) 에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PSI의 차단 활동의 법적 정당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PSI는 중동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에서 서서히 지지를 확보해가고 있다. PSI의 연혁 및 활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비확산 기구 및 체제 목록 (Inventory of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Organization & Regimes),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편을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inven/pdfs/psi.pdf>>

Sources: [1] Hassan M. Fattah, “U.S.-Led Exercise in Persian Gulf Sets Sights on Deadliest Weapons,” New York Times, October 31, 2006, p. 10.

[2] Associated Press, “Iran Criticizes US-Led Nuclear Interception Naval Exercise in the Persian Gulf,”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nline edition, October 20, 2006, <<http://www.iht.com>>. [3] Mohammed Abbas, “U.S., Allies Hold Anti-WMD Drill at Iran’s Doorstep,” Reuters, October 30,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4] “U.S. led Multi-national Security Exercise to Counter Traffick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volves NZ,” IRN News via Thomson Dialog NewsEdge, October 30, 2006, <<http://www.tmcnet.com>>. [5] Mazen Mahdi, “Training Exercise Off Bahrain Targets Illicit Weapons Transport,” Deutsche Presse-Agentur, October 30,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6] Ralph Dannheisser, “Twenty-Five Nations to Join in Nonproliferation Exercise,” WashingtonFile (U.S. State Department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7 News Service), October 28, 2006, <<http://usinfo.state.gov>>. [7] “Naval Forces Conduct Exercise Leading Edge,” Press Release, Naval Forces Central Command, U.S. 5th Fleet, Public Affairs Office, October 30, 2006, <<http://www.cusnc.navy.mil/articles/2006/193.html>>. [8] “Iran ‘Steps Up Nuclear Programme’,” BBC News, October 27, 2006, <<http://news.bbc.co.uk>>. [9] Nazila Fathi, “Iran Revolutionary Guards Hold War Games After U.S. Exercise,” New York Times, November 3, 2006, p. 12. [10] “South Korea Sends Delegates to Observer PSI Exercise,”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 October 29,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 북한 핵실험 강행에 따라 UN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돼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탄산 인근의 지하 실험시설에서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다.[1] 핵실험이 실시되자 즉각 국제적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부에 교역 및 금융 제재 조치를 내리기 위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이번 UN 결의안 이전에도 여러 국가로부터 일반적인 제재조치를 당해왔으며,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훈련 이후에도 UN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바 있다.

2006년 10월 14일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UNSCR 1718) 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및 탄두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2] UNSCR 1718호는 2006년 7월 15일, 북한이 장거리 탄두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시스템의 실험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으로, 실험이 있는 지 열흘 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UNSCR 1695호의 제재내용을 보다 확대한 것이다. UNSCR 1695호는 UN 회원국들이 북한과 미사일 및 미사일 관련 물자, 물질, 제품, 기술 등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물자가 북한으로 반 출입되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었다.[3]

UNSCR 1718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UN 회원국은,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WMD 관련 물자 및 기술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이를 차단하고 검사할 수 있다 (2) 북한에 대한 군 장비 및 관련 부품의 수출입을 금지한다 (3) 북한에 대한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한다 (4) UN 회원국은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다 (5) 북한의 WMD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 여행 금지조치 (travel ban) 를 내린다.[2] UN 안보리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도 설립하였다.[4] 2006년 11월 1일, UN 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WMD 관련 이중용도 물자 목록이 담긴 UNSCR

1718호 부속서 3부의 최종버전을 승인하였다. 이들 목록은 핵공급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등의 통제 목록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다.[5,6,7]

UNSCR 1695호 및 1718호가 통과된 이후, 여러 국가들, 특히 북한의 인접국가들은 UN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행동을 시작하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UN 안보리 결의안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서서히 강화해왔으며,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금수조치 및 여행금지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의 일본항구 출항을 금지했으며, 북한 선박이 UNSCR 1718호에서 금지한 물자를 북한으로 반출입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일본 영해 상의 경비 활동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또한, 북한 정부의 무기프로그램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및 개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내리기도 했다.[8,9]

중국은 북한 국적의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 압박을 위한 다른 조치들에 있어서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이후 북한 국경에서의 검문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북한 간 국경에서의 거래 물량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10]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한국의 한 NGO는 중국 정부가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사업가들에게 북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300,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11] 중국 국영은행들 역시 북한 투자와 관계된 대출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송금 (wire transfers) 등 기타 거래 업무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13] 10월 말에 발표된 중국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6년 9월에 북한 정부에 원유를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주요 에너지 제공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공급 중단은 북한 체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원유 판매를 중단한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이것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 및 호전적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강한 압력을 가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14]

2006년 10월 말, 홍콩 군 당국은 강남 1호 (Kang Nam I) 와 그 자매선 강남 5호 (Kang Nam V) 등 북한 국적의 선박 두 척을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억류했다. [편집자 주: 해상 안보 및 세관 행정 부문에 있어, 홍콩특별행정구역 (Hong Kong Administrative Region [SAR]) 은 중국 본토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 일간지 중앙일보는 강남 1호의 이번 억류 조치는 미국 당국이 홍콩에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며, 미국 정부가 해당 선박의 수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며, 홍콩과 미국 정부 모두 이번 억류 조치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북한 선박의 억류 조치가 북한 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한 방편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현재 두 척의 선박은 안전 상태 개선을 위해 홍콩에 억류되어 있다.[15]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제재 조치의 시행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혼란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26일, 한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WMD 프로그램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거래를 통제하고 북한 당국자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16] 한국 정부는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규약 (PSI) 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송민순 대통령 안보보좌관은 PSI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 해도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 조치"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7]

Sources: [1] "NTI Website Resources on North Korea," Updated October 26, 2006,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e3\\_special\\_northkorea.html](http://www.nti.org/e_research/e3_special_northkorea.html)>.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October 14, 2006,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6/572/07/PDF/N0657207.pdf?>>. [3] "Security Council Condemn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Missile Launches, Unanimously Adopting Resolution 1695 (2006)," U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July 15, 2006, <<http://www.un.org/News/Press/docs/2006/sc8778.doc.htm>>. [4] Bloomberg News, "U.N. Blocks Items from N. Korea," Philadelphia Inquirer, November 2, 2006, <<http://www.philly.com>>. [5] "Letter dated 13 October 200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Security Council Document, S/2006/814, October 13, 2006. This document had as an attachment the NSG guidelines published a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 INFCIRC/254/Rev.8/Part 1 (dated March 20, 2006). [6] "Letter dated 13 October 2006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France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Security Council Document, S/2006/815, October 13, 2006. This document has as its annex the MTCR "Equipment, Software and Technology Annex". [7] "Letter dated 1 November 2006 from the Chairman of the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 (2006) concern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UN Security Council Document, S/2006/853, November 1, 2006. This document superseded document S/2006/816 which is mentioned in UNSCR 1718. The attachment to S/2006/853 includes a list of "other WMD" relevant items, namely chemical and biological related items control by the Australia Group. [8] "Japan Decides on New Sanctions against N. Korea," Jiji Press Ticker Service, October 1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9] "Japan Won't Hal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Deutsche Presse-Agentur, November 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0] "China Quietly Applies Pressure to Cut Off DPRK Military's Financial Resources," Sing Tao Huan Chiu Wang (Hong Kong-based Internet News Service), October 18, 2006; in OSC Document KPP20061025032002. [11] Yang Jung A, "Less Than \$300,000, NK Investment in China," The Daily NK (online news service of North Korean Democracy Network), October 26, 2006, <<http://www.dailynk.com/english>>. [12] "Suspension of Loans for DPRK Investment: Moves of Freezing Funds Spreading: China's Major Bank Branch," Jiji Web, October 25, 2006; in OSC Document JPP20061026038001. [13] "Aeroflot Office in N. Korea Fails to Transfer Money via Chinese Bank," ITAR-TASS, October 25, 2006, <<http://www.tass.ru/eng>>. [14] Joseph Kahn, "China May Be Using Oil to Press North Korea," New York Times online edition, October 31, 2006, <<http://www.nytimes.com>>. [15] Greg Torode, "The Tide of Affairs," South China Morning Post, October 2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6] Tanalee Smith, "South Korea Announces Sanctions against North, Despite Warning from Communists," Associated Press, October 27,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7] Yonhap News Agency, "South Korea

Sends Delegates to Observe PSI Exercise," BBC Worldwide Monitoring, October 29,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 특별 기사

### WMD 선적을 금지하게 공해안전협약 (High Seas Safety Convention) 개정안이 1년 넘게 비준을 기다리고 있어

비확산 연구소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의 레아 쿠친스키 (Leah Kuchinsky)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05년 10월 14일, 안전보장이사회의 특별 해사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는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 행위억제 협약 (1988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조항의 개정을 위해 미국이 주로 제안한 다수의 개정안 (이하 2005년 SUA 개정안 [2005 SUA Amendments]) 을 통과시킨바 있다.[1] 이 제안에 따르면, 2005년 SUA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WMD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WMD 테러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WMD 확산에 맞설 수 있는 국제법적 기반이 현저히 확대된다. 특히, 개정안은 1988년 SUA 협약에 정의된 위반 행위의 목록을 확대하고, WMD 관련 테러행위에 연루되었거나 WMD 화물 및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한 승선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있다. 신규 개정안은 법적으로 2005년 SUA 개정안을 비준하기로 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SUA 가입국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선적 중 신규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범위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이란처럼 타국가로 WMD 관련 물자를 운송할 때 상업선박 (commercial vessels) 을 자주 이용하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현재 1988년 SUA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총 142개국이며, 이중 일단 12개국이 2005년 개정안을 비준할 경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1] 현재까지, 개정안에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을 거치지 않은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미국 등 10개국이다.[2] 따라서, 2005년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 배경

SUA 협약은 1985년에 아킬레 라우로 호 납치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해상에서 상업선에 대해 벌어지는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국제적 법체계가 미흡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8년에 도입되었다. [편집자 주: 1985년 10월, 이탈리아 국적의 아킬레 라우로 호가 팔레스타인 해방전선 소속의 테러리스트들의 의해 납치되었다. 납치범들은 선상에서 미국 국적의 유대인 한 명을 살해하였으며, 튀니지로 안전하게 이송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킬레 호를 이집트의 항구로 운항했다. 비행기를 이용해 튀니지로 떠나던 납치범들은 결국 미국 전투기에 의해 붙잡혀 이탈리아에 있는 NATO

비행장에 착륙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금 및 강제송환 약속을 거부했다.][3] 1988년 SUA 협약은 무력을 이용한 선박의 강탈,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 선박의 손상 및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의 선적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협약은 해상에서 발생한 테러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국제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확한 “기소 및 소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4] 그러나, 1988년 SUA 협약은 선상에서 발생하였으나 안전한 항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테러 행위 - 생화학, 방사능 물질의 방출 등 - 에 대한 금지 조항은 담고 있지 않으며, WMD 및 WMD 운송시스템, 관련 물자 등의 운송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3]

#### SUA 개정안

2001년 9월에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이후, UN 안보리는 국제해사기구 (IMO) 가 국제해상 안전 상황을 재검토하도록 했다.[5] 2001년 11월, IMO 회원국들은 해상에서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나은 안보체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새로운 법적, 기술적 조치들을 제안하는데 앞장섰다.[6]

IMO 회원국들은 2005년 10월의 IMO 회의를 통해 기존의 불법행위 목록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SUA 협약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개정안은 시민을 위협하거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특정 행위를 강요 혹은 중단시킬 목적으로 방사능 물질 및 생화학, 핵무기 등과 같은 비재래식 (unconventional) 무기를 선적 및 하역하거나 선박을 공격할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물질의 선박 운송 역시 불법행위로 정하고 있다:

- 시민을 위협하거나 정부 및 국제기구의 특정 행위를 강요 혹은 중단시킬 목적으로 사망 및 심각한 신체 손상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방사능 물질
- 모든 종류의 생화학, 핵무기
- 핵폭탄 제조 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사찰을 받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5개 회원국을 보유한 핵공급그룹 (NSG) 의 가이드라인에서 통제하고 있는 핵 물질 및 핵 관련 장비

- 생화학무기 혹은 핵무기의 설계, 제조, 운반에 사용될 목적을 띠고 있으며 이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는 모든 종류의 장비, 물질,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7]

개정안은 또한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을 가능한 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8]

새로이 강화된 제한 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5년 개정안은 한 당사국 (요청국) 의 사법당국 혹은 권한을 가진 당국자가 다른 당사국 -기국 (flag state) 의 깃발을 단 선박과 마주쳤을 때, 요청국이 상대 선박 혹은 선박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기국에게 승선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발급되면, 요청국은 선박에 승선, 조사를 실시하고, 승선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할 수 있다. 만약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요청국은 기국을 상대로 기국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해당 선박, 화물, 승선인 등을 억류하기 위한 허가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9]

요청국이 기국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 먼저 기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새로 만들어진 2005 SUA 개정안이 공해상에서 기국 선박의 자주권을 보호하는 UN 해양법 협약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의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요청국의 승선 허가 요청 후 4시간 안에 기국이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요청국은 자동적으로 승선 및 이후 진행에 대한 승낙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10]

이와 유사하게, 2005 SUA 개정안의 또 다른 조항들은 SUA 개정안이 회원국들이 핵확산방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생물무기협약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Convention [BTWC]) 등에 가입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 책임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11] 따라서, 핵확산방지조약 (NPT) 의 승인을 얻은 핵무기 보유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이 상업선을 이용해 핵무기 및 관련 물자를 운반하는 것은 2005 SUA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핵확산방지조약 (NPT) 은 수령국에서 IAEA 점검을 받게 되는 핵 물질 및 핵 관련 장비의 운송 역시 허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도 SUA 개정안 하에서 불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화학무기협약 (CWC) 은 회원국들이 비회원국에게 화학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조화학물질 (precursor chemicals) 등의 수출 역시 규제하고 있다. 화학무기협약 (CWC) 이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전조화학물질을 운반하는 행위는 2005 SUA 개정안 하에서도 불법 행위가 아니다. 생물무기협약 (BTWC) 역시 생물학무기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으나 평화적 목적의

생물병원체 이전은 허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 행위 역시 SUA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2005 개정안은 육로, 해상, 항공을 통한 WMD 관련 물자의 이전을 막으려고 애쓰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를 보완하고 있다.[12] PSI 는 미국의 추정에 따르면 70개국 이상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비공식 (informal) 협정이다. PSI 참여국 간의 WMD 관련 화물의 단속은 파트너 국가의 관련 사법당국과 관련 국제법규 및 체제를 통해 이루어진다.[13] 공해 (high seas) 라는 관할 지역에 있어서, 2005 SUA 개정안은 국제적 불법 행위의 목록을 확대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지 및 처벌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PSI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달리, 국가 수출통제법규 및 선적 규정과 같은 기존의 사법당국은 PSI 하에서의 차단활동에 대해서만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한계와 비판

위에서 지적했듯이, 2005 SUA 개정안은 1988년 협약 및 의정서, 2005년 개정안 등을 비준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란과 북한처럼 이들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개정된 SUA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개정안 지지자들은 강화된 SUA 체제의 외부에 있는 확산세력들이 새로운 개정안의 유효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5년 10월에 열린 IMO 협상에서 미국측 대표단장은 북한을 예로 들면서, 낡은 소규모 상선들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군 관련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나라의 국기를 단 선박에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회원국들은 새로운 SUA 규정에 의거하여 기국으로부터 승선 허가를 받음으로써 확산국이 WMD 관련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14] 다른 전문가들 역시 개정된 SUA 협약이 일부 확산국들로 하여금 국제해양안보표준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넣는데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행동수칙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15]

인도와 파키스탄 등 기존의 SUA 협약 및 의정서의 서명국이었던 두 나라는 2005 SUA 개정안 내 NPT 대우 문제를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두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첫 번째 핵실험이 모두 1967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NPT에 의거한 핵무기 보유국 (Nuclear Weapon State) 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경우, NPT가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IAEA 안전조치하의 점검을 받지 않은 핵무기 및 핵 물자를 인도 및 파키스탄으로 해상 운송하는 행위는 2005 SUA 개정안에 의거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 이들 두 국가는 개정된 법안이 5개의 NPT 핵무기 보유국에게만 “특별

지위 (privileged status)” 를 부여한다고 주장했다.[16] 개정안은 NPT 국가와 비 NPT 국가 간의 안전한 핵 물질 교역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핵 물질의 도착지가 비 NPT 국가일 경우 도착국의 IAEA 안전조치를 따르게 된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개정안에 서명할 경우, 자국의 전략 핵 프로그램이 새로운 SUA 차단규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17]

2005 SUA 개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선박 승선 체제가 기국의 승선 요청 동의 - 반드시 받을 것은 아닌 - 여부에 철저히 의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국가들은 임의적으로 “자동적인” 승선 특권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의 문제 및 자주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임의적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개정안은 WMD 프로그램에 사용할 용도의 물자 이동을 범죄화하고 있지만, 이중용도 물자의 경우 그 속성상 그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18] 요청국이 승선 요청을 내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화물의 존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도 보다 근본적인 과제이다.

#### 현황 및 전망

1988년 협약의 가입국은 총 142개국으로 전세계 선박의 92%를 포괄하고 있으며, 132개국이 서명한 1988년 의정서의 경우 세계 오프쇼어 플랫폼 (offshore platform) 역량의 약 88%가 이 협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국제해사기구 (IMO) 의 가입국이 총 166개국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다른 해양협약에 비해 IMO에의 참여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편집자 주: 1988 SUA 협약 및 SUA 의정서의 현재 가입국 목록은 <[http://www.imo.org/Conventions/mainframe.asp?topic\\_id=248](http://www.imo.org/Conventions/mainframe.asp?topic_id=248)> 을 참조하시오.] 위의 수치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2005년 개정안이 기존의 SUA 협약 및 의정서만큼 보편적으로 이행될지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2006년 2월 개정안에 대한 서명이 시작된 이후 개정된 SUA 협약 및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단 10개국에 불과하며 비준국은 아직 없다. 새로운 개정안이 12개국의 비준을 확보하여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개별 회원국들이 개정안에 의해 보다 확대된 불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요건 역시 개정안의 이행을 늦추는 요인 중 하나이다. [편집자 주: 원 SUA 협정하에서 협정이 성공적인 검색이 이루어진 승선의 근거를 제공한 알려진 사례는 단 한 건이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브래드 키서먼 (Brad Kieserman) 대장에 따르면, 미국 해안경비대는 2002년 3월,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들이 선원으로 일하는 세이셸 (Seychelles) 기를 단 선박 한 척을 붙잡았으며, 해당 선박 요리사들이 2명의 선원을 살해한 사실을 알아냈다.][3]

개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005 SUA 개정안의 서명 기한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추가로 서명하는 국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향후 2년 안에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12개국의 비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지지자들은 개정안이 시행되지 전까지는 그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PSI를 통해 WMD 관련 물자를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ources: [1] Protocol of 2005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IMO document LEG/CONF.15.21, November 1, 2005. For a review of the underlying SUA Convention, se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ebsite, <[http://www.imo.org/Conventions/mainframe.asp?topic\\_id=259&doc\\_id=686](http://www.imo.org/Conventions/mainframe.asp?topic_id=259&doc_id=686)>. The protocol adopted at the same time as the 1988 Convention and incorporated into it, extends the Convention to offshore oil and gas platforms. [2] Author’s e-mail correspondence with Chris Young, Senior Legal Officer in the IMO Sub-division for Legal Affairs, December 2006. [3] Brad Kieserman, “Preventing and Defeating Terrorism at Sea: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 Draft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China, in John Norton Moore, et al., ed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Leiden, The Netherlands, 2006). As noted by Kieserman, the SUA Convention does not extend to “warships, ships owned or operated by a state when being used as a naval auxiliary or for customs or police purposes or ships that have been withdrawn from navigation or laid up.” [4] Catherine Zara Raymond, “Governments Meet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Legal Measures,”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Singapore) website, October 27, 2005, <<http://www.ntu.edu.sg/idss/publications/Perspective/IDSS752005.pdf>>. [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evision of the SUA Treaties,” Opening Statement by Efthimios Mitropoulos,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October 10, 2005, IMO website, <[http://www.imo.org/Circulars/mainframe.asp?topic\\_id=1042&doc\\_id=5302](http://www.imo.org/Circulars/mainframe.asp?topic_id=1042&doc_id=5302)>. [6] Richard Shaw, “Terrorism and Wrecks Dominate Talks: The Latest Session of the IMO Legal Committee, which looked at antiterrorism clauses, wreck removal and the detaining of innocent crew,” Lloyd’s List, May 1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7] Paraphrase of Amended SUA Convention, Article 3 bis. The 2005 SUA Amendments modify and add text to the original 1988 SUA Convention. For convenience, references to the amendments are numbered as they would appear in the amended version of the convention. These references will begin with “Amended SUA Convention.” [8] Amended SUA Convention, Article 8 bis, paragraph 2. [9] Amended SUA Convention, Article 8 bis, paragraph (5)(b). [10] Amended SUA Convention, Article 8 bis, paragraph (5)(d). [11] Amended SUA Convention, Article 2 bis, paragraph (3). The portion of Article 2 bis, paragraph (3) referring to the NPT and Article 3 bis, paragraph (2), which also refers to the NPT, are together informally known as the “NPT savings clause.” See also, “Ship-boarding: An Effective Measure Against Terrorism and WMD Proliferation?” A Summary of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Laws Discussion Group at Chatham House, November 24, 2005, <<http://www.chathamhouse.org.uk/pdf/research/il/ILP241105.doc>>. [12]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t/np/c10390.htm>>;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U.S. Department of State, September 4, 2003, <<http://www.state.gov/t/isn/rls/fs/23764.htm>>. [13]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 Record of Success, testimony by Stephen G. Rademaker,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Arms Control,”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International Terrorism and Nonproliferation, June 9, 2005, <<http://www.state.gov/t/ac/rls/rm/47715.htm>>. [14] Linda Jacobson, Assistant Legal Advisor in Office of Diplomatic Law and Litigation at the U.S. State Department, July 12, 2006, telephone interview with author. [15] Lt. Commander Brad Kieserman, U.S. Coast Guard, Legal Operations Group, July 14, 2006, telephone interview with author. [16] Andreas Persbo

and Ian Davis, "Sailing Into Unchartered Waters," BASIC website, June 2004, <<http://www.basicint.org/pubs/Research/04PSIsum.pdf>>. [18] "Protocols to the UN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and A Draft Protocol to the Protocol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Fixed Platforms Located on the Continental Shelf: Comments on Counter-terrorism, Non-proliferation and Boarding Provision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Revision of the SUA Treaties, Agenda item 6.1 (LEG/CONF.15/14), September 22, 2005,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12 <<http://www.state.gov/t/isn/trty/58319.htm>>. [19] Wade Boese, "Treaty Amended to Outlaw WMD at Sea,"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05, <[http://www.armscontrol.org/act/2005\\_12/Dec-WMDsea.asp](http://www.armscontrol.org/act/2005_12/Dec-WMDsea.asp)>. [19] David Ruppe, "Obstacles Surface to Proposed U.S.-Indian Nuclear Deal," Global Security Newswire, September 9, 2005, <[http://www.nti.org/d\\_newswire/issues/2005\\_9\\_9.html](http://www.nti.org/d_newswire/issues/2005_9_9.html)>. [20] Sharon Squassoni, "U. S. Nuclear Cooperation with India: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29, 2005, <[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50809.pdf](http://fpc.state.gov/documents/organization/50809.pdf)>.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t is published 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6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Sonia Ben Ouagrham

**Associate Editors-in-Chief**  
Dauren Aben  
Stephanie Lieggi

**Senior Consultants**  
Daniel Pinkston  
Leonard S. Spector

**Co-Editor**  
Alexander Melikishvili

**Associate Editors**  
Tanat Kozhmanov  
Jing-dong Yuan

**Contributors**  
Lindsie Brown  
Dave H. Kim  
Leah Kuchinsky  
Stephanie Lieggi  
Ingrid Lombardo  
Erik Quam  
Kazutaka Sakurai

**Reviewers**  
Markus Binder  
Richard Cupitt  
Jean du Preez  
Dennis Gormley  
Elina Kirichenko  
Carlton Thorne  
Lars Van Dassen  
Raymond Zilinskas

**Copy Editors**  
Maria Haug  
Katya Shutova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111 Nineteenth Street, NW, 12<sup>th</sup> Floor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64-6000; Fax: (202) 238-9603  
email: [intexcon@miis.edu](mailto:intexcon@miis.edu)